

충청북도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3. 4. 14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4월 1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4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제88회 임시회

○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3. 4. 12) 상정,

○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3. 4. 14) 재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 세 용)

가. 제 안 이 유

현행조례의 불합리하고, 미비한 점을 개선·보완하고, 학원의 시설·설비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함.

나. 주 요 골 자

○ 학원시설은 동일건물 동일층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개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함. (안 제3조 제4항)

○ 학원주위의 교육환경 정화지역 범위를 강화함. (안 제6조)

○ 학원설립시 적용되던 동일교습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규정을 삭제하고, 동일교습과정의 동일건물내 설립금지 조항으로 대체함. (안 제7조 제1항)

- 학원설립요건중 적정시설규모를 강화함. (안 제7조 제2항)
-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조항을 규정함. (안 부칙 제3조)
- 일부교습과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, 교습과정별 반당시설·설비 기준을 강화함. (안 별표1, 별표2)

3. 검토 의견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·개선하고, 교육여건의 변동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,

- 학원설립시 적용되던 동일 교습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을 삭제하여 학원설립 운영의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,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일 교습과정의 동일 건물내에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
- 학원설립 요건중 학원운영의 정상화 도모를 위해 시설규모를 조정하여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(교습실)의 시설기준 강화를 통해 교육환경개선을 꾀하였으며,
-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교육환경 저해업소로부터의 거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와 교육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며,
-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교습과정을 신설 변경하며 교습과정별 반당시설,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 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단과학원 설립문제 등에 대하여 학원 관계자간에 커다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토 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 사 경 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소수의견 요지 : " 입시학원 시설기준을 완하하여 교육의 자율성도모와
설립자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
소수 의견이 있었음."

8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개정 조례안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